주민등록신고서(재외국민용)

※ 뒤쪽의 유의	사항을 읽고 작성하기	바라며,	색상이 어두운 킨	<u> 은</u> 신고인이 적기	지 않습	니다.		(앞	(쪽)
접수 번호		신	고일	년 월	일	등록기	준지 통보		(인)
	성명	주	민등록번호			연락처			
세대주 정보	(서명 또는	인)							
	주소								
* 주민등록	신고 대상자								
세대주와의 관계	성명(한자)	성별	주민등록번호 (생년월일)	등록기준지	국L 신_	내거소 고번호	영주 국가 (지역)	체류 자	·격
기타									
「주민등록i	법」 제6조제1항 및	제10조	의2제1항과 깉	은 법 시행령	제14	조제2항	에 따라 주민	등록신고	를 합
니다.								O.I.	01
※ 세대주와 스	 !고인이 같으면, '신고?	이'카은	<u></u> 작성하지 않습니다	 			<u>년</u>	월	일
신고인					<u> </u>				
	성명	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<u>,</u>				
	연락처								
읍 • 면 • 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									
				임장					
「주민등록	법」 제11조제2항 위임합니다.	단서 및	같은 법 시행	령 제19조제1	항에	따라 자	외국민 주민	등록신고	를 위
선포현에게	귀합합니다.						년 월	일	
위임한 사람(재외국민 본인)							(서명 또는	= 인)	
	위임	받은 시	사람(신고인)과	의 관계					
	1. 재외국민임을	확인할 수	: 있는 서류(재외	국민등록부 등본	또는 ;	해외이주신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<u> </u>	
첨부 서류	2.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								
			즈미드로 <i>스</i>	 신고 확인서					
* 확인서는 전	선산 교부를 원칙으로	하며,				도로 작성	성해 교부합니	다.	
접수 번호			신고	<u>l</u> 일					
신고인	성명		세대	주					
	주소								
위와 같이 3	│¨ 주민등록신고서를 ?	접수하였			Г				
면 월 일 음•며•동작 및 축작소작30							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 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재외국민 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1. 신고인은 '신고인'의 '성명'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, '세대주 정보'의 '성명' 칸에 세대주의 확인 (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)을 받아야 합니다.
- 2. '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' 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'생년월일'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- 3.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- 4. '영주 국가' 칸에는 영주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()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5. '체류 자격' 칸에는 영주, 가족체류, 유학, 취업, 투자, 상용(상사원), 공무, 기타(자세한 내용)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.
- 6. '기타'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를,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.
- 7.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 증이 발급됩니다.
- 8.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'주민등록신고 확인서'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9.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10.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'위임장'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,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·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,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(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「형법」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).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11.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19조제2항).
- 12.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·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,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37조).